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49호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공 고 제 6 7 2 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 법예고 및 의견수렴 2
- 공 고 제 6 7 3 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 견수렴 9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672호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 개정이유**

-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과장(5급)의 복수직렬 조정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장의 직급(렬) 규정(안 제14조)
 - 식품위생과장(5급) 복수직렬 조정에 따른 과장의 직급(렬) 규정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1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과장(5급)의 복수직렬 조정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과장의 직급(렬) 규정(안 제14조)
 - 식품위생과장(5급) 복수직렬 조정에 따른 과장의 직급(렬) 규정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를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보건소) ① 보건소장은 지방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보건행정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 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 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은 지방의 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 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 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u>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u> ,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지방보 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 로 보한다.	제14조(보건소) ① ----- ----- ----- ----- ----- ----- ----- ----- ----- ----- ----- ----- <u>지방행정사무 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 사무관으로</u> -----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1-673호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남 동 구 청 장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 총 정원 내에서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여, 코로나19 재난대응 등 부서(기관)간 협업 및 종합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5급 및 6급 복수직렬 조정
 - 가.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안 별표1]
 - (직속기관) 행정·보건 5급 △1 → 행정·보건·간호 5급 +1
 - 보건·간호 6급 △3 → 행정·보건·간호 6급 +3
 - (동) 행정 6급 △2 → 행정·보건·간호 6급 +2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계	1,284	763	23	128	13	357(10)
정무직 계	1	1	0	0	0	0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79	758	23	128	13	357
2급 소계	1	1				
지방이사관	1	1				
4급 소계	8	6	1	1		
지방서기관	6	5	1			
지방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69	37	2	9	1	20
행정	29	16	2			11
의무	4			4		
시설	4	4				
행정·사회복지	9	6				3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0	6			1	3
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무·보건·의료기술·간호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6급 소계	318	196	8	23	3	88
행정	116	61	5			50(10)
세무	14	14				
사회복지	15	5				10
숙 기	1		1			
공업	2	2				
녹지	3	3				
보건	2			2		
환경	5	5				
시설	21	21				
전산	1	1				
방송통신	1	1				
운전	4	3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3				
행정 · 세무	13	10			1	2
행정 · 사회복지	42	17	1			24
행정 · 사서	2	2				
행정 · 농업	1	1				
행정 · 공업	6	5			1	
행정 · 녹지	3	3				
행정 · 해양수산	2	2				
행정 · 보건	3			3		
행정 · 환경	3	3				
행정 · 시설	19	19				
행정 · 전산	2	2				
행정 · 방송통신	1	1				
사회복지 · 시설	1	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공업 · 환경	3	3				
공업 · 시설	3	3				

보건 · 의료기술	2			2		
보건 · 간호	5			5		
의료기술 · 간호	3			3		
시설 · 해양수산	1	1				
행정 · 세무 · 사회복지	1	1				
행정 · 속기 · 사무운영	1		1			
행정 · 농업 · 수의	2	2				
행정 · 녹지 · 환경	1				1	
행정 · 보건 · 간호	5			3		2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4			4		
7급 소계	460	283	10	45	5	117
행 정	166	98	5		2	61
세 무	31	31				
사회복지	69	22				47
속 기	2		2			
사 서	3	3				
공 업	7	6	1			
농 업	4	4				
녹 지	8	8				
수 의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7			7		
의료기술	1			1		
간 호	12			12		
간호조무	1			1		
환 경	12	12				
시 설	45	45				
전 산	9	9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방송통신	4	4				
운 전	12	5	1		1	5
전화상담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3	1	1			1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5	3				2
행정·사서	2	2				
행정·공업	3	3				
행정·간호	1	1				
행정·시설	6	6				
행정·전산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5	3			2	
녹지·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4			4		
보건·간호	15			15		
의료기술·간호	5			5		
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8급 소계	345	190	2	46	4	103
행 정	128	83	2			43
세 무	6	5			1	
사회복지	80	30				50
사 서	5	5				
공 업	8	8				
농 업	3	3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녹 지	5	4			1	
보 건	14	1		13		
의료기술	4			4		
간 호	24			24		
환 경	4	3			1	
해양수산	1	1				
시 설	26	26				

전 산	3	3				
방송통신	3	3				
운 전	5			1		4
사무운영	4	1				3
행정 · 세무	2	2				
행정 · 사회복지	5	2				3
행정 · 공업	2	2				
행정 · 녹지	1	1				
행정 · 해양수산	1	1				
행정 · 시설	3	3				
행정 · 방재안전	1	1				
공업 · 환경	1	1				
공업 · 시설	2	1			1	
보건 · 의료기술	1			1		
보건 · 간호	1			1		
행정 · 보건 · 간호	1			1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1			1		
9급 소계	77	44		4		29
행 정	30	15				15
세 무	4	4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동
사회복지	12	1		1		10
사 서	6	6				
공 업	1	1				
녹 지	1	1				
보 건	2			2		
의료기술	1			1		
시 설	10	10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5	1				4
행정·녹지	1	1				
행정·방재안전	2	2				
연구직 계	1	1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계	4	4				
5급(상당) 소계	1	1				
비서실장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8급(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